

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7호서식] <개정 2021. 6. 17.>

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변경허가 **신청서**
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 변경등록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0일
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법인 또는 기관명		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)		

상호		허가·등록번호	
----	--	---------	--

변경사항

	변경 전	변경 후
제조공장 소재지		
제조공정 및 절차 등		
제품의 성질·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		
수입상대방		
수입제품의 명칭, 종류 및 수량 등		
제품의 성분 및 외관		

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후단, 같은 조 제2항 후단, 제36조의2제1항 후단, 같은 조 제2항 후단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 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 허가증 또는 수입업 등록증 2.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